

학위논문에 관한 내규

제 정 : 1991. 03. 02

최근개정 : 2023. 11. 01

제 1 조(목적)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위논문제출자격)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석사학위과정

가. 4학기 정규등록을 한 자와 27학점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27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3.00 이상인 자 (2023.11.01. 개정)

나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
다.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

2. 박사학위과정

가. 6학기 정규등록을 한 자와 60학점이상 취득(석사인정학점 포함) 또는 당해 학기까지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3.00이상인 자(2020.06.26. 개정)

나.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(2020.06.26. 개정)

다. 입학일로부터 재학연한을 넘기지 않은 자

제 3 조(학위논문)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작성되어야 한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학위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,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.

2. 박사학위과정 :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.

제 4 조(학위논문 원고제출) 학위논문 작성자는 석사학위과정 3부, 박사학위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5 조(심사위원)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.

1. 각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을 학생별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2.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인 경우 3인, 박사학위 논문인 경우 5인으로 하며,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.

3. 심사위원의 자격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하되, 심사위원을 위부인사로 의뢰할 경우 석사학위 심사위원 2인, 박사학위 심사위원 3인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6 조(심사위원장) 석사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(주심)

이 되어 논문심사를 주도하고, 심사결과는 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박사과정에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(주심)이 될 수 없다.

제 7 조(학위논문 심의의 구분)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.

제 8 조(논문심사 방법) ① 학위논문 심사는 본 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이행한다.

②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취급방법의 타당성과 논문내용의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.

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구두시험)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시행한다.

② 논문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두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두시험에 재차 응시할 수 있다. 단, 재시험에 불합격될 경우 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된다.

제 10 조(논문심사판정) 각 학위과정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, 주 논문 주제의 타당성,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, 학문적 기여도 및 구술시험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“가”, “부”로 판정한다. “가”로 평가할 때 합격으로 판정하며 “부”로 평가할 때 불합격으로 판정한다.

제 11 조(학위논문의 체제)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논문작성요령 및 양식에 따라야 한다.

제 12 조(학위논문 제출 부수) 완성된 학위논문(석사 3부, 박사 3부)을 소정기일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[2020.04.08.개정]

제 13 조(시행) 삭제(2023.11.1. 개정)

부 칙

부칙(내규 1991.3.2. 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1991.3.2.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부칙(내규 2023.11.1. 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.11.1.일로부터 시행한다.

석.박사학위 논문 작성 요령

1.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학위논문의 체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.
 - 1) 판식 : 4.6배판(18.5 cm × 25.5 cm)
 - 2) 지질 : 70파운드 이상 모조지
 - 3) 인쇄방식 : 황서로 작성하여 인쇄하되, 공판자, 활판인쇄 또는 컴퓨터 인쇄로 한다.
 - 4) 표지색상 : 석사 - 곤색, 박사 - 흑색
 - 5) 제본형식 : 클로스양장 및 페이퍼파운드
 - 6) 표지인쇄 방법 : 다음 별도 도해에 따르되,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한다.
(별지 1참조)
 - 7) 학위논문 제출안 표지 : 별지 2의 도해에 따라야 한다.
 - 8) 학위논문 인준 속표지 : 별지 3의 도해에 따라야 한다.
3. 내용작성상 주의사항
 - 1) 논문제목 : 가급적 간략해야 한다.
 - 2) 용어 :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혼용으로 한다.
 - 3) 요약 : 간략하고 명확해야 한다.
 - 4) 초록 : 국문작성일 경우는 1종의 외국어 초록을, 외국어 작성인 경우는 국문초록을 첨부한다.
4. 학위청구논문 순서는 다음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.
 - 1) 표제지 : 별지 1참조
 - 2) 안표지 : 별지 2참조
 - 3) 인준서 : 별지 3참조
 - 4) 감사의 말씀(있을 경우)
 - 5) 목차
 - 6) 요약
 - 7) 본문
 - 8) 참고문헌
 - 9) 논문초록
5. 활자의 크기
 - 1) 본문은 8Pt 또는 9Pt를 원칙으로 한다.
 - 2) 표제지, 안표지, 인준서는 별지 1,2,3과 같으나 만별, 장별 또는 논문 전체에 걸쳐 일련번호를 붙여서 하단 또는 본문의 뒤에 일관하여 기재하되 논문전체에 걸쳐 통일되어야 한다.

학위논문예 관한 내규 3 - 1 - 10 ~ 4

<별지 1>

18.5cm

목원대학교 대학원

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3 - 1 - 10 ~ 6

<별지 2>

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(2호)

-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- (4호)

지 도 교 수 ◦ ◦ ◦ (4호)

이 논문을 ○○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. (4호)
(박사)

20 년 월 일 (4호)

목원대학교 대학원 (3호)

○ ○ 과 (4호)

○ ○ ○ (3호)

<별지 3>

4.5cm			
4cm	○ ○ ○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. (2호)		4cm
9cm			
주 심 : _____ (3호)			
1.5cm			
부 심 : _____ (3호)			
1.5cm			
부 심 : _____ (3호)			
1.5cm			
부 심 : _____ (3호)			
1.5cm			
부 심 : _____ (3호)			
7cm			
7cm	20	년 월	(4호) 7cm
6cm	목 원 대 학 교 대 학 원		(3호) 6cm
3cm			